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
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

Q. '신진여성연구원'이라면, 이전에 경력이 있으면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?

A. 아니오. 「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여성 인력으로, 사업 신청일 기준 자격인정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('20.8월 졸업 예정자 포함) 이전 **경력의 유무와 상관없이** 대상이 됩니다.

Q. 지원인력에게 반드시 기준연봉을 지급해야 하나요?

A. 동 사업의 기준연봉은 사업참여를 위해 지원인력과 계약해야 하는 최소 연봉이므로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. 기준연봉을 초과해서 계약하셔도 되나, **기준연봉(2,400만원) 미만으로 계약하실 경우 지원이 불가**합니다.

Q. 기준연봉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?

A. 기준연봉은 **(기본급 + 월정액수당) x 12개월**로 산정하셔야 하며 **퇴직금은 제외**합니다. 월정액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하며 협약체결 후에는 반드시 해당금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.

Q. 선정된 이후, 여성 인력을 다른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나요?

A. 사업기간 중 지원인력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퇴사한 경우, **지원기간이 2개월 이상** 남아 있으면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Q. 지원인력이 다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으면 안 되나요?

A. 다른 국가/대학/민간의 **연구개발과제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.** 다만, 참여율 및 인건비는 해당 사업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

Q. 지원인력이 타 인건비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,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?

A. 정부,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고용창출 목적의 인건비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(단, 사업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)

※ **정부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내역 확인방법 : 워크넷(www.work.go.kr)** → 마이페이지 홈 → 온라인 신청관리 → 정부지원일자리 탭 선택 → 일자리 참여 내역 조회(일자리 신청 내역 아님, **지원인력 개인이 조회 가능**)

※ 교육훈련 참여 및 참여기간이 종료된 건은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음

Q. 지원인력이 현재 수습기간 중이라 급여가 100% 지급이 되지 않는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?

A. 가능합니다. 근로계약서 상에 연봉이 2,400만원 이상임이 명시되고 수습기간에 대하여 언급이 되어 있다면 사업 참여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

Q.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A.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1년 미만인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, 재무제표증명자료가 없더라도 매출증명서 및 공인회계사 증명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

Q.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는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요?

- **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(http://total.kcomwel.or.kr)에서 발급**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개인 로그인→증명원 신청/발급→보험구분 고용, 조회구분 사용 선택→조회→고용/산재 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출력

※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(개별사업장) 또는 선택 사업장 자격 이력 내역서 불인정

※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(공고일 이전 발급본 불인정)

※ 화면 캡쳐본 불인정